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더 넓고 두텁게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힘이 되겠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공통요건

사업자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폐업이 아닐 것 *무등록 사업자 및 휴·폐업자(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포함) 지원 제외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1. 2. 28. 이전일 것
매출 규모	’20년 매출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 *소기업 기준 :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의거)
기타	전문직,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플러스.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전화 상담 1811-7500 / 온라인 채팅 상담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세부 지원기준

1인 다수 사업체	최고 단가의 2배 한도 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를 지원 *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계산하여 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위임장 제출 필요
매출감소 기준*	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일반업종(매출감소)에 해당 기준을 적용 ① ('19년 이전 개업자')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② ('20년 1월~11월 개업자')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③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매출감소 기준의 ①, ③은 부가세(사업현황) 신고매출액, ②는 국세청 보유 자료(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함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로 환산)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가 '20.11. 24.~'21. 2. 14. 기간 중 시행한 방역조치 업종(시설)을 기준으로 함
(아래는 예시로서 지자체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됨)

구분	지원금액	수도권 적용 업종(시설) 예시	비수도권 적용 업종(시설) 예시
집합금지 지속 (6주 이상)	500만원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400만원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아이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300만원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❷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감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며, 매출감소 기준 및 아래 지원요건을 적용함

구분	지원금액	지원요건
일반업종 (경영위기)	300만원 ~2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지원
일반 (매출감소)	100만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원

*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상세내용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 참조

대상별 신청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3월 29일(홀수), 30일(짝수)에 한해 홀짝제를 시행하며, 1인 다수 사업체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

업종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등 외)		3.29~5.14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4.26~5.1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일반업종 (경영위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3.29~5.14
		'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4.19~5.14
		'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4.26~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일반업종 (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경우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3.29~5.14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해당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19~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5.14

* 4월 26일 이후 신청대상자는 위임장,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관련 내용 4월중 별도 공지)